Energetic Dangjin
당찬 당진

전문 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DANGJIN SPORTS COUNCIL
당진시체육회

전문 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정 2022.06.29. 제2차 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체육인재육성사업 체육지도자 배치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문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당진시 체육진흥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배치한 지도자를 말한다.

제2장 임 면

제3조(채용) 전임지도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해당종목에 대한 채용 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2. 직무의 성질상 공개채용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3. 종목전공 체육지도자로서 체육 진흥에 공헌한 자를 채용할 때로 한다.

제4조(채용공고) ① 공고는 시험기일 20일전까지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공고기간은 최소 10일 이상을 두고, 3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의 접수 기간을 둔다.

③ 채용공고는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기관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공고의 내용은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5조(합격자 결정방법) ① 신규채용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서류심사에서 결정한 후 면접시험 결과 최고점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임용후보자로 선정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이때 최종 점수는 면접시험의 결과만을 적용한다.

② 상위 순으로 신체검사, 자격증 등 관련 자료 확인 후 임용한다. 단, 상위자의

임용이 확정된 후에는 차 순위자의 임용 후보자 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제6조(채용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도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퇴직 기준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7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의무) ① 지도자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무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시험위원을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사회적인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서 시험위원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4.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임용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심사위원은 시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임용) 전문체육지도자의 재임용은 본회에서 검토한 후 회장이 임용한다.

제9조(인사위원회 설치) ①지도자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운영 한다.

제10조(자격기준) 전문체육지도자의 자격기준은 전문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단, 다음 각 호에서 2개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격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1.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
2.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및 팀을 지도육성한 실적이 있는 자
3. 기타의 전국대회에 본도 대표로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및 팀을 지도육성한 실적이 있는 자

4. 국가대표 선수 및 도 대표선수로 출전 경험이 있는 자
5.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타 시·도로부터 체육지도자로 초빙된 사실이 있는 자
6.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당종목 선수로 활동한 자

제11조(정년) ① 전문체육지도자의 최초 임용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한다.

② 전문체육지도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지도실적이 우수한 전문체육지도자는 본회에서 검토 후 회장이 1년 단위로 3회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구비서류) ①신규 임명받고자 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사진부착)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자기소개서 1통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5. 전문체육지도자 자격증
6. 경기실적증명서, 지도경력증명서, 선수경력증명서 각 1통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통
8. 채용 신체검사서 1통
9. 서약서(본회 소정양식) 1부
10. 신원진술서

② 본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경력, 병역 및 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 제9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체육지도자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 등에서”라 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단체 등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단체 등에서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히 전문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6. 체육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향응수수) 훈련비 횡령,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7.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4조(겸직금지) 전문체육지도자는 타직을 겸할 수 없다.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해임) ① 전문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선수지도 업무에 태만한 지도자
2. 전문체육지도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부족한 사람
3. 전문체육지도자로서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폭력,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
5. 그 밖에 전문체육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문체육지도자의 지도실적이 3년간 계속 부진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도하고 있는 팀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전문체육지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지도 팀 소속장이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심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17조(관리) 전문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신상관리와 훈련지도 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지도 관리 및 교육은 본회에서 주관한다.

제18조(전문체육지도자의 직무) 본회에서 임명한 전문체육지도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여야 하며, 직무상으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1. 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2.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계획 수립, 추진 (별지2호 서식)
3.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참가
4. 기타 우수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에 관계되는 사항

제19조(근무지) ①전임코치의 근무지는 당진시체육회에서 지정하는 학교 및 팀(협회)에서 근무한다.
② 대회참가시 출장비는 파견된 학교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시간) ①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지도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휴일근무가 요청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휴일을 고지하여 휴일을 대체 할 수 있다.

③ 지도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④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20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수시보고) 전문체육지도자는 훈련장소와 상황을 본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도내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출전 시 3일전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1. 전국규모대회 출전 시 출전선수 인원, 숙소위치,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경기 종료 후 경기결과를 보고한다.
2. 최종 경기가 끝나면 대회 종합 결과를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에 의하여 보고한다.

제22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체육회 취업규칙을 따른다.

제23조(훈련계획) ①전임코치는 연간, 월간, 주간 훈련계획서를 수립하여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훈련계획서는 도민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일정을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월간훈련계획서는 전월 25일까지 체육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훈련일지) ①전임코치는 매일 훈련내용을 일지로 기록관리하여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훈련일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월1회 체육회 사무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급 여

제22조(급여지급) ① 전문체육지도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체육지도자 급여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회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퇴직금) 전문체육지도자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게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보수등 지급) ①전임코치의 보수는 계약에 의한 연봉제로 하며 매월 25일 지급한다.

②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및 도민체전 상위 입상시 당진시체육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체육지도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회 회장이 이를 정한다.

③ 수당이외에 수익자부담을 학부모총회에서 의결하여 지도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퇴직금) 전문체육지도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게 년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 〈제정 202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 도 자	담 당 자	사무국장
직접 서명 必		

[ ]월 훈련일지

지도자명/종목명 :

구분 \ 날짜		일(일)	일(월)	일(화)	일(수)	일(목)	일(금)	일(토)
훈련현황	시간							
	장소							
	인원							
	내용							
추가훈련	장소							
	내용							

[별지 제2호서식]

2022년도 (____)월
지도자 월간훈련계획서

결재	지 도 자	담 당 자	사무국장
	직접 서명 必		

종 목 명 :　　성　명:

인원								총원	전지훈련		
	학 년								기 간		
	학생수								장 소		
	기 타								기 간		
									장 소		

훈련계획	훈 련 내 용
훈련시간	
1주	
훈련시간	
2주	
훈련시간	
3주	
훈련시간	
4주	
전지훈련	

기 타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대회 출전 상황 보고

「예시)종목명○○○ (부별:초등부/○○학교)」

1. 대 회 명 : (예시)2022 전국종별ㅇㅇ선수권대회
2. 대회기간 : (예시)2022. 5. 5.(목)~8.(일) / 5.13.(금)~16.(월) 8일간
3. 장　　소 : (예시)경상북도 OO군 국민체육센터 내
4. 출전인원 : 총　명
5. 출전결과

연번	성 명	성별	소 속(학 교)	학년	세부 종목
1					단체전 /개인전
2					-65kg급
3					400mR
4					복식/단식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보 고 자 : 당진시OO협회(연맹) OOO 또는 전문체육지도자 OOO

[별지 제4호서식]

대회 출전 결과 보고

「예시) 종목명 ○○○ (부별:중등부/○○학교)」

1. 대 회 명 : (예시) 2022 전국종별선수권대회
2. 대회기간 : (예시) 2022. 5. 5.(목)~8.(일) / 5.13.(금)~16.(월) 8일간
3. 장　　소 : (예시) 경상북도 OO군 국민체육센터 내
4. 출전인원 : 총　명
5. 출전결과

경 기 결 과 ※ 개인별 상세히기입	**결과 보고 예시** **□ 단체전** ○ 대회결과 : 1회전 탈락 (옥련중과 대결) - 출전명단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패(1:3) **□ 단식** ○ 제이홉 (당진중1) 단식 2회전 탈락 - 1회전:승(2:0) , 2회전:패(1:2) ○ 정국(당진중2) 단식 1회전 탈락 - 1회전:패(1:2) ○ 슈가(당진중2) 단식 1회전 탈락 - 1회전:패(1:2) ○ 진(당진중2) 단식 1회전 탈락 - 1회전:패(0:2) ○ RM(당진중1) 단식 2회전 탈락 - 1회전:승(2:0) , 2회전:패(0:2) ○ 뷔(당진중3) 단식 2회전 탈락 - 1회전:승(2:0) , 2회전:패(1:2) ○ 지민(당진중3) 단식 2회전 탈락 - 1회전:승(2:0) , 2회전:패(0:2) **□ 복식** ○ 진,슈가(당진중1) 복식 3회전 탈락 - 1회전:승(2:0) , 2회전:승(2:1) , 3회전:패(0:2) ○ 제이홉,정국(당진중2) 복식 1회전 탈락 - 1회전:패(1:2) ○ RM,지민(당진중3) 복식 2회전 탈락 - 1회전:승(2:1) , 2회전:패(1:2)

보 고 자 : 당진시OO협회(연맹) OOO 또는 전문체육지도자 OOO

[별지 제5호서식]

관외훈련(전지훈련) 상황 보고

「 종 목 : 0 0 0 」

1. 훈련내용 : (예시)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도대표 합동훈련
2. 훈련기간 : (예시) 2022. 5. 20.(금)~21.(토) 2일간
3. 장　　소 : (예시) 공주종합운동장 일원
4. 훈련인원 : 총00명 (남00명, 여 00명)
5. 훈련 참가선수명단

연번	성 명	성별	소 속(학 교)	학년	세부 종목
1					400mR(계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보 고 자 : 당진시OO협회(연맹)-OOO 또는 전문체육지도자 OOO